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137
----------	-------

발의연월일 : 2025. 9. 19.

발 의 자 : 한정애 · 서영석 · 임오경
추미애 · 이학영 · 박지원
송옥주 · 김 윤 · 윤준병
강선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의 시장안정화제도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한계가 있음. 특히 낮은 유상할당 비율로 인해 배출권 가격이 지나치게 낮아져 배출권거래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환 부문은 배출권 순매수, 산업 부문은 순매도하는 비정상적인 현상으로 인해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상황임.

또한 배출권 공급 과잉에 따른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해 기업의 탈탄소 고효율 기술 개발 유인이 감소하고 있으며, 기후대응기금 재원 확보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배출권거래제 시장안정화를 위해 제도의 일부를 보완하여 배출권거래제의 제도적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2조 및 제23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할당대상업체에는”을 “할당대상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이 법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비용발생도”를 “탄소집약도”로, “업체”를 “할당대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업체”를 “할당대상”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높게”를 “높거나 낮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수요의”를 “수요 또는 공급의”로, “증가하는”을 “증가하거나 감소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배출권 가격이 6개월 연속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 가격 이하로 또는 최대 가격 이상으로 형성될 경우

3. 배출권 거래가격의 최소 가격 또는 최대 가격 설정 및 이를 유지하기 위한 경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조건의 변경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배출권의 할당) ① ~ ④ (생 략)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할당대상업체에는</u> 배출권의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할 수 있다. 1. <u>이 법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비용발생도 및 무역집약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종에 속하는 업체</u> 2.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업체</u>	제12조(배출권의 할당)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u>할당대상에는</u> ----- ----- -----. 1. <u>탄소집약도</u> ----- ----- ----- <u>할당대상</u> 2. ----- ----- ----- <u>할당대상</u>
제23조(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화) ① 주무관청은 배출권 거래가격의 안정적 형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해당할 우려가 상당히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3조(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화) ① ----- ----- ----- ----- ----- -----

할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다.

1. 배출권 가격이 6개월 연속으로 직전 2개 연도의 평균 가격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높게 형성될 경우

<신 설>

2. 배출권에 대한 수요의 급증 등으로 인하여 단기간에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장 안정화 조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2. (생략)

<신 설>

-----.

1. -----

-----높거나 낮게-----

2. 배출권 가격이 6개월 연속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 가격 이하로 또는 최대 가격 이상으로 형성될 경우

3. -----수요 또는 공급의-----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

-----.

1.·2. (현행과 같음)

3. 배출권 거래가격의 최소 가격 또는 최대 가격 설정 및 이를 유지하기 위한 경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조건의 변경

3. (생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